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. 8. 9 선고 2022가단6089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7. 19.

판 결 선 고 2022. 8. 9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8. 2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C의 상속 지분인 3분의 1만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상속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8. 30. 접수 제737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조재현

별지